## 붙임 4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관리 및 교통 운영방안

## 가 도로 관리(차로폭 조정 등) 운영방안

구 분	내 용	비고
보도 (보행로)	- 보도 또는 보행로는 2.0m 이상 확보 - 불가피할 경우 1.5m 이상으로 축소 가능 - 보행로 1.5m 이상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보·차혼용도로 설치 검토	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16조
차로	- 최소차로폭인 3.0m 적용 -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로폭을 2.75m까지 좁힐 수 있음	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10조

구 분	내	용
보차 혼용 도로	- 도로 : 5.0m 미만 - 차로 : 보도(보행로) : 기 타 : 통학로를 중심으로 등·하교시간대에 경찰·민간기관·학부모회 등의 교통안전지도 병행	5.0m 미만 보차혼용도로 5.0m 미만

구 분	내	용
일방 통행 도로	- 도로 : 4.25m 미만 - 차로 : 2.75m - 보도(보행로) : 1.5m 이상 - 기 타 : 편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 - 도로 : 5.0m 이상 ~ 7.0m 미만 - 차로 : 3.0m - 보도(보행로) : 2.0m 이상 - 기 타 : 편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2.75m 일방통행 4.25m 미만 1.5m 이상
	- 도로 : 7.0m 이상 ~ 8.0m 미만 - 차로 : 3.0m - 보도(보행로) : 2.0m 이상 - 기 타 : 양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2.0m 이상 3.0m 일방통행 7.0m - 8.0m

구 분	내	용
양방 통행 도로	- 도로 : 7.0m 미만 - 차로 : 2.75m - 보도(보행로) : 1.5m 이상 - 기 타 : 편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1.5m <sup>*</sup> 이번 2.75m 2.75m
	- 도로 : 8.5m 미만 - 차로 : 2.75m - 보도(보행로) : 1.5m 이상 - 기 타 : 양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2.75m 2.75m 2.75m 01th
	- 도로 : 8m ~ 10.0m 미만 - 차로 : 3.0m - 보도(보행로) : 2.0m 이상 - 기 타 : 편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2.0m 이성 3.0m 3.0m
	- 도로 : 10m ~ 16.0m 미만 - 차로 : 3.0m - 보도(보행로) : 2.0m 이상 - 기 타 : 양측에 보도(보행로) 설치	2.0m

## 나 도로 교통 운영방안

구 분	내 용	비고		
일방통행제 운영	-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지정·운영할 수 있음 - 보도가 없는 양방2차로 도로에 시행하여			
	보행공간 확보			
구 분	내 용	비고		
시간제 차량 통행제한	-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9조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- 등하교시간에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	어린이보호구역 건인 공지 시간재사왕동회원 여기주의(200m 이용:30-09:00 (유·원예설)		
녹색신호시간 연장 운영	-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	A MARI		